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이주민의 직업에 대한 연구: 비농업직(非農業職)을 중심으로*

이 채 문**

본 논문에서는 186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비농업직을 중심으로 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인 이주민의 직업에 관하여 고찰한다. 먼저 이주민의 직업선택과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에 관한 이론들, 즉 문화이론, 분절노동시장이론, 인적자본론 및 인종적 특수시장이론 등을 살펴보고 이를 이론이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한인의 직업들 중 농업을 제외한 여러 가지 직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존 이론들에서는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공급적 측면과 수요적 측면을 모두 분리하여 고찰하고 있다는 한계성을 지적한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 이주민의 사례를 들어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공급적·수요적 측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통합적 모델을 제시한 후 이러한 모델에 따라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이주민의 직업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광업, 어업, 자영업종, 서비스직종, 기타 단순 노무직 등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이주의 통합적 모형에서 공급적 측면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는 한인의 농업중심적 성격, 이민직전의 조선에서의 사회경제적 모순 및 한인의 자급자족적 성격 등과 수요적 측면에서는 러시아의 이민정책과 러시아 극동의 다양한 지역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핵심단어: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이주, 이주민직업, 연해주, 이주통합모형

* 본 논문은 2000년 6월 16-17일 청주대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사회사 분과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유익한 토론을 해주신 정부기록보존소 학예연구관 전현수 박사, 그리고 본 논문을 읽고 상세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 경북대 사회학과 전임강사.

I. 서 언

본 논문에서는 비농업직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극동지역 초기 한인이주민의 직업에 대하여 고찰한다. 시기적으로는 대략 한인들의 이주가 시작된 1860년대에서 중앙아시아로 한인들의 강제이주가 시작되기 직전인 1930년대까지가 될 것이다.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이주민의 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많이 시도되었다. 미국에서의 한인이주민의 경우를 볼 때,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의 노동자로서 1,133명의 한인들이 일하기 시작한 1903년부터 시작하여 최근에는 한인 이주민의 수가 100만 명을 상회함에 따라(최협·이광규, 1998:123), 한인 이주민에 관하여 이민의 규모, 성비(性比),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직업과 경제구조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오히려 미국이민보다 일찍 시작된 한인의 러시아 이민과 관련하여 이주한인의 직업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최근 러시아 한인 이주민들에 대한 연구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 발굴된 이주한인들에 대한 러시아족의 자료와 관련 학자들의 관심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한인이주사에 관한 개괄적 연구(e.g., 권희영, 1999; 이상근, 1996) 러시아 극동지역한인의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e.g., *Пак Дмитрий Николаевич*, 1992) 또는 러시아지역에서의 항일투쟁(e.g., *Пак Борис*, 1992) 같은 정치적 측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그보다 진일보한 연구로서는 러시아, 특히 중앙 아시아 한인에 대한 사회사적 고찰 등이 없지는 않으나(e.g., *Ким Сын Хва*, 1965; 박명규 외, 1996; 고송무, 1984; 김 게르만, 1994; 이문웅, 1981; 이광규·전경수, 1993) 초기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한인의 직업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연구의 부족으로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여러 가지 겸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이주민의 직업과 관련한 저명한 학자인 후지타와 오브라이언 등의 연구(Patsiorkovsky, Fugita and O'Brien, 1995)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 서부지역에 이주한 한인들간에 놀랄 만한 유사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미국서부지역의 한인 이주자들의 직업유형에서 보이는 인구 유입지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이주자들을 소규모 상업에 종사하도록 한다는 가설이다. 후지타와 오브라이언은 이 가설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인 이주민

들에게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적어도 본 논문의 저자에게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이 가설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진다.

물론 미국 서부지역의 한인들과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들의 이주민들의 직업양상을 비교하는 것은 본 논문의 목적은 아니나 이주한인들의 직업에 관한 비교연구는 본 연구가 나아갈 장기적인 연구프로젝트의 지향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장기 프로젝트의 하나의 시발점으로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인이주민들의 직업에 관한 시론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이주민들의 직업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살펴보고, 기존의 관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한인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통합적 모형을 제시한다. 그 다음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 이주사를 개관한 후 한인들의 직업에 관한 관련 자료를 통해 광업직, 어업직, 서비스직, 단순 노무직 등의 순서대로 비농업 직종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직업상황에 대하여 앞서 제시한 이론적 관점에 따른 토론과 그 합의를 제시한다.

II. 이론적 논의

이주민의 직업선택과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으나 여기서는 문화이론, 분절노동시장이론, 인적자본론, 인종적 특수시장이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이론들의 대부분은 미국에서의 이주민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된 것들로서 이를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민의 직업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려고 한다.

먼저 문화이론(cultural theory)에 따르면 이주자나 소수민족이 상업에 주로 종사하는 것을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적 특성으로 설명한다. 문화적 특성에는 유출국인 본국에서의 직업적인 전통, 동족간의 사업자금의 유통이나 동족간의 협동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문화적 전통속에서 생활해왔기 때문에 중국인들과 같은 이주자들이 새로운 유입국에서 소규모 장사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Frazier, 1957; Freedman, 1959; Sowell, 1975).

문화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국인의 경우에 주목하여 중국인들이 돈을 다루는데 능숙한 사회에서 자란 전통 때문에 이들이 세계 어디로 가든지 장사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본다. 중국인들이 본국에서 습득한 장사에 필수적인 문화적 요인들로서 부의 추구에 대한 존경심과 이웃들간에 혹은 동족간 금전거래의 전통 등을 지적한다 (Freedman, 1959:64-5). 그러나 문화이론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무시되고 있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Yoon, 1997).

이러한 정통적인 문화이론(orthodox cultural theory)에 대한 대안으로서 나타난 것이 반응적 문화이론(reactive cultural theory)인데, 반응적 문화이론에 따르면 소수민의 문화적 요소보다 소수민족이 직면하고 차별적 상황을 더 강조한다. 그리하여 헉터(Hechter, 1976:217-8)는 문화적 분업(cultural division of labo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민자들은 이주지에서 기존의 주민들이 잘 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주민들이 소규모 상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유입국에서의 이주민들에 대한 제한된 기회 때문이라고 보며, 이 때문에 오히려 소수민족간의 단결이나 협력이 더욱 강화된다고 한다. 이런 강력한 집단간의 단결이나 협력은 이들 소수민족이 소규모 상업에서 타민족과 경쟁할 경우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Light and Rosenstein, 1995). 다시 말해서 이주자들은 유입국에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차별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기 민족들을 위한 배타적인 경계를 설정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이주민들의 상업은 유입국에서의 적대적 사회환경에 대한 집단적 반응으로서 이들은 동족집단에 의존하여 집단적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자기들간의 협력적인 사회적·경제적 관계를 유지한다(Bonacich and Modell, 1980; Portes and Zhou, 1992). 이를 잘 나타내는 예가 중국인들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으로 이주한 중국인의 경우 중국인들의 여러 조직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주로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이나 동향인들에 의해 조직되어, 처음 이민을 오는 중국인들에게 거처를 마련해주는 단순한 모임에서부터 시작하여, 심지어 어음이나 사업자금을 대여하거나 일자리까지 마련해주는 회관(匯款: hui-kuan)조직과 같은 자치적이고 강력한 자발적인 것까지 있었다(Chen, 1992; Lee, 1960; Lyman, 1974). 크리스만(Crissman, 1967)은 북미나 동남아시아의 차이나타운에 존재하는 이러한 조직은 해외의 현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이식되어 온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크리스만에 의하면 해외의 이러한 중국인 조직들은 분절되어 있는 위계질서를 유지하는 계층조직이라고 주장한다. 즉 최상부에는 중국인단합우호회(CCBA: Consolidated Chinese Benevolent Association)가, 그 아래에는 지역조직으로

서 회관(匪款)이나 통(tong), 그리고 제일 아래에는 동족집단(clan organizations)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응적 문화이론은 집단간의 결속과 협력을 강조한 나머지 집단내부의 계급차별성과 갈등, 그리고 소수민족 구성원의 개별적 배경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Yoon, 1997).

분절노동시장이론(segmented labor market theory)에 의하면 소수민족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이유를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지배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노동시장을 분할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소수민족집단은 제도적으로 높은 수입, 승진 및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인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Doeringer and Piore, 1971).

분절노동시장이론은 이중노동시장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과 분할노동시장이론(split labor market theory)으로 나누어진다. 이중노동시장이론은 노동시장에서 얻는 이득이 인적자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을 비판하고 오히려 노동시장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근로자가 승진, 소득, 사회적 위신 등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내부노동시장에 속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외부노동시장에 속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중노동시장이론에 따르면 이주민들은 이러한 점에서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못한 외부노동시장에 위치하게 된다고 본다. 그러나 보나치치의 분할노동시장론(split labor market theory)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보나치치(Bonacich, 1972)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시장이 인종, 성, 출신지 등에 의해서 완전히 분할되어있다고 간주한다. 즉 노동시장분절을 계급관계로 파악하여, 주로 백인으로 구성된 고임금 노동자 집단, 유색인 또는 이주자로 구성된 저임금 노동자 집단 및 고용주 집단 등 세 이해집단간의 갈등관계로 설명한다. 먼저 비용절감을 선호하는 고용주들은 고임금 근로자를 저임금 근로자로 대체하려고 하며, 이에 대해 고임금 근로자들은 노조를 통하여 저임금 노동자를 배척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비록 높은 질의 인적자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주민들은 지배집단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낮은 임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배집단의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특권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주민을 선호되는 직업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이들이 불리한 직업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Bonacich, 1972; 이혜경, 1998; 최협·이광규, 1998: 106).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쌈 임

금의 노동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기득권을 가진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민자들의 값싼 노동력은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자본가집단과 노동자집단간의 관계에서 혼히 갈등이 발생하며 19세기 미국사회가 그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그 당시 미국의 광산업에 종사하는 아일랜드계 노동자들은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중국인들이 자기들의 직업을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속에 이를 양 집단간에 많은 갈등이 야기되었다 (Chen, 1992: 39-40).

그러나 라이트(Light, 1981)는 분할노동시장(split labor market)이 인종갈등의 필 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월리만(Wallmann, 1974)의 스위스에서의 외국노동자에 관한 연구를 예로 들면서 인종갈등은 분할노동시장이 없이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할노동시장이론은 복잡한 인종관계를 설명하는 지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인적자본론에서는 이주민의 직업상의 불이익을 사회적인 측면에 두는 분절노동시장이론과는 대조적으로 주로 개인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교육은 인간의 자본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며, 고용은 바로 이 인적자본을 기초로 한다고 간주함으로서(Becker, 1975), 인적자본론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내국인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는 아니라 유입국 노동시장에 처음 들어온 낯선 존재로, 유입국 노동시장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쌓지 못한 사람으로 본다(이혜경, 1998: 13-101). 인적자본론의 관점은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을 주로 이주자의 '기술전환도' (transferability of skills)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Chiswick, 1978, 1983).

기술전환도가설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주해오는 외국인 이주자들은 유출국에서 얻은 기술이나 교육 또는 생산성과 같은 인적자본의 기술전환도가 낮아서 이주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회경제적 하향이동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¹⁾ 그러나 체류기간이 길수록 기술전환도가 높아지고

1) 기술전환도가설은 '인종계승모형' (ethnic succession model)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 인종계승모형에 의하면 새로운 소수민족이민자들은 처음 한 세대 정도의 기간동안 가장 빈곤한 직업과 주택에 거주하다 새로운 이주자가 이주해오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직업을 차지하게 되면, 이들은 좀 더 나은 직업으로 상승이동을 해간다는 것이다(Aldrich, 1975; Warner and Srole, 1945: 63). 즉 도착시기에 따라서 소수민족간의 서열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예로서 뉴욕의 유태인들이 봉제공장의 노동자에서 의류도매상의 주인으로 이동해감에 따라 뒤이어 이주한 이탈리아인들과 푸에르토리코인들이 이러한 계적을 따라 이동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중국인들이 이들의 마지막 주자로서 대열에 합류하였다는 것이다(Chen, 1992: 40-41).

유입국의 노동시장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쌓게 되므로 이주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나아진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주자들이 이주초기에 단순노동 등 하류직업에 많이 종사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주민들이 유입지에서 필요한 기술, 교육, 현지언어 구사력의 부족 및 유입지 문화와 사회의 부적응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으며, 그러나 이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더 나은 직업상의 지위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인종적 특수시장 이론(ethnic enclave theory) 또는 기회구조이론(opportunity structures theory)에 따르면 이주자들의 일부는 같은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나름대로의 시장을 형성한다고 보며 이민자들의 직업은 이를 가능케 하는 유입국에서의 기회, 인종적 특수시장, 소수민족이웃 및 시장의 주변적 영역 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본다(Portes and Bach, 1985; Waldinger, 1986). 유입국에서의 이주민의 직업기회는 폴 슈(Siu, 1987)의 연구에 의해서 잘 설명되고 있다. 슈는 20세기 초기 시카고지역의 중국인 세탁업자들의 사회를 설명하면서 1928년 시카고지역에서 비중국인 세탁업자의 수가 모두 421개였을 당시 중국인세탁업소는 704개로 절정에 달했는데, 이 현상은 당시 시카고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즉 당시 시카고지역이 산업도시로 급격히 팽창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인종적 특수시장은 현지주민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이 거래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를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수요는 주로 소수민족이웃들이 사는 동족인들에 의해 채워지게 된다. 따라서 이주민들은 자기와 같은 종족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잘 알므로 그런 상품에 대한 독점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Light, 1981; Portes and Zhou, 1992). 예를 들어 현지언어에 능숙하지 않은 이주민들의 경우 이들을 도와 줄 이민자 전문직, 말하자면 회계사, 변호사, 의사 등이 필요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이들 이주민들을 위한 전문직 시장이 형성된다. 즉 소수민족이웃이 존재하므로 소수민족이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이 생겨날 수 있다.

인종적 특수시장의 예로서 미국 로스엔젤레스나 뉴욕의 중국인촌(China Town), 마이애미의 쿠바인 촌(Little Havana), 로스엔젤레스의 한인촌(Korea town)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이민자 집단이 다 자신들의 인종적 특수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고, 이민자집단의 다양한 계급구성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즉 고국에서의 사업경험이 있는 자본가계급 출신의 이주자와 유입국에서의 고용이 어려운 노동자계급의 합작품으로 인종적 특수시장이 형성된다(이혜경, 1998).

III.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통합적 모형

위에서 살펴본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이론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민과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공급적인 측면과 수요적인 측면이 그것이다. 먼저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공급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이론들로서는 정통적 문화이론, 인적자본론 등을 들 수 있고, 수요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분절노동시장이론과 기회구조이론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주민들의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기존이론들이 주장하듯이 수요적인 측면과 공급적인 측면이 별개로 또는 일방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두 측면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후술하겠지만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민들의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이주민들의 자질과 같은 공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이 생활하는 러시아 극동지역이라는 유입지의 상황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먼저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공급적 및 수요적 측면을 설명하는 이론을 간략히 살펴보고 난 후, 둘로 나누어져 있는 공급적인 측면과 수요적인 측면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통합적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공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통적인 문화이론에서는 이주민의 직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로서 이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본국에서의 직업에 관한 전통, 동족간의 거래전통 등 본국에서 습득한 이주민의 특성을 듣다 (Frazier, 1957; Freedman, 1959; Sowell,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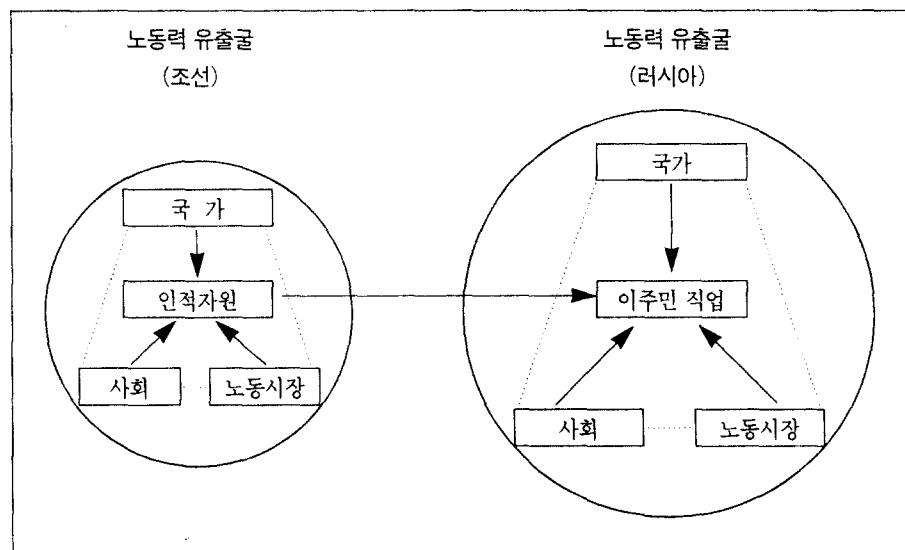
반면에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수요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들은 주로 이주민들이 유입국에서 부딪치는 상황적인 요인들을 강조하는데, 대표적 이론이라 할 수 있는 기회구조이론에 의하면 소규모 상업과 같은 이민자들의 직업을 가능케 하는 것은 유입국에서의 기회라고 보면 여기에 이주민들이 거래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소수민족시장과 소수민족이웃 및 시장의 주변적 영역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Waldinger, 1986). 또한 분절노동시장이론에서도 노동시장의 분할에 의해서 소수민족 이주민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입, 승진,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노동시장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아, 유입지에서의 상황적인 여건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이러한 양분법은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이주를 설명하는데 상당한 한계점을 가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한인들의 직업을 설명하는데

는 한인들이 가진 문화적 요인이나 그들의 인적자본의 특성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긴 하지만, 한인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처한 상황적 요인 또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민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러시아의 이민정책으로서, 이주민에 대한 이주정책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는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설명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러일전쟁 이전까지는 러시아는 전반적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척을 위하여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취하였으나(Шилковичъ, 1911; Граве, 1912) 러일전쟁 이후로는 유럽에 있는 자국민의 이민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고, 또 황화론에 근거하여 어장과 사금장에서의 한인노동자의 사용을 금하기도 하였다(Ким Сын Хва, 1965). 따라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한인 이주민 직업에 관한 논의에는 이러한 이주민 직업에 관한 공급적인 요인과 유입지에서의 수요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인이주민의 직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공급적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력 유입국의 현지 상황, 즉 수요적인 측면을 모두 종합할 수 있

〈도표 1〉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통합적 모형



는 통합적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도표 1>은 노동력 유출국 조선의 인적 자원이 노동력 유입국 러시아로의 이주과정을 통하여 러시아 사회에서 직업을 갖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즉 러시아로 이주하여 직업을 갖게 되는 이주민의 인적자원에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서 유출국 조선에서의 여러 가지 국가의 정책, 조선의 문화적·사회적 상황, 그리고 당시의 조선의 인력과잉 등을 들 수 있고, 또 이주민들이 유입국에서 직업을 가지게 되는 상황에 관련되는 요인으로서 러시아의 이민정책, 러시아 극동지역 사회의 상황과 현지의 노동시장 등을 들 수 있다(이채문, 2000a: 2000b). 다시 말해서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통합적 모형은 한인이주민들이 유출국 조선에서의 사회·문화적 요인과 조선에서 습득된 인적자원 등도 한인들의 러시아 현지에서의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포함되지만, 노동력 유입국 러시아에서의 상황 또한 이들의 직업획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IV.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한인의 이주에 관한 개관

대부분의 관련 문헌에 의하면 한인들의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이주가 시작된 것은 대략 1863년으로 본다(Граве, 1912; КНМ Сын Хва, 1965; 뒤바보, 1920; Кнммангем 1926).²⁾ 당시 러시아는 중국과 아이훈 조약(1858년)을 통해서 아무르주를 영입하고, 그 다음 베이징 조약(1860년)을 체결하여 연해주를 차지함으로써 조선과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이후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대한 자국민 식민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1858년에는 '연해주-아무르주 이민규칙' (沿黑龍移民規則)을 제정,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러시아 자국민의 이주실적은 극히 저조하여 1861년 동시베리아 총독인 무라비예프(Николай Муравьев)는 다시 자유이민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에 따라 외국인들의 자비이민을 인정함으로써 러시아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특권을 부

2) 한인의 이주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일부 문헌(金東進, 1932)은 1853년 韓一歌가 남부 우수리의 포시에트로 이주한 것을 한인 이주의 시초로 밝히고 있으나, KHM(1925:100)은 1860년을 시초로 잡고 있고 또 시청(西清)의 『黑龍江外記』를 번역한 이시카와 스스무(石川年, 1943:303)에 의하면 1960년에는 아직 한인의 이주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여하여 극동 및 시베리아지역으로의 외국인 이민을 유치하려고 하였다(朝鮮總督府, 1918:202).

이즈음 조선의 북부지방에서는 기근으로 인하여 한인들이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민을 금지하는 조선 정부의 엄격한 법에도 불구하고 한인의 러시아 이민은 계속되었는데 한인이민자의 수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여러 가지 단편적인 통계수치를 종합하여 보면 어느 정도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表 1)참조).

1863년 13가구와 1864년 60가구 308명이 이주한 이래 1882년까지 20년간 약 10,000명이 러시아로 이주하였다(Граве, 1912:103). 한인 이민의 초창기부터 1884년 조로(朝露)간 국교성립의 시기까지를 이민 제1기로 보는데 당시 한인이주민의 수는 대략 연평균 450여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李東彥, 1991:3).

〈표 1〉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이주자 수

연도	한인수	인용자료
1863	13가구	Граве, 1912:101; Ким Сын Хва, 1965:20;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в ДВК Историческая справка (國史編纂委員會, 1997:472)(이하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國史編纂委員會(1997)로 약칭)*
1864	60가구(308명)	Граве, 1912:101;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國史編纂委員會, 1997:472); Ли У Хе & Ким Ен Ун, 1997:31-35
1865	60가구	Ким Сын Хва, 1965:20
1866	100가구	Ким Сын Хва, 1965:20
1867	185가구(999명)	Пак, 1993:24
1868	165가구	Граве, 1912:101;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國史編纂委員會, 1997:472); Ли У Хе & Ким Ен Ун, 1997:31-35
1869	166가구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國史編纂委員會, 1997:472); Ли У Хе & Ким Ен Ун, 1997:31-35
	766가구	Граве, 1912:101
	761가구(5,310)	П. Ф. Унтербергер 1912.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1906-10 гг. Санктп етербург: ВФ Киршбаум pp. 50-3. Wada(1987:25) 재인용 (이하 'Унтербергер' 1912), Wada (1987:25) 재인용으로 약칭)

연도	한인수	인용자료
1870	9,000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國史編纂委員會, 1997: 472)
	9,000(대략)	Ли У Хе & Ким Ен Ук, 1997:31-35)
	8,000-9,000	田川孝三, 1944:550
1882	10,137(농촌주민만을 대상)	Граве, 1912:104; 玄圭煥, 1967:809;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國史編纂委員會, 1997:473); Ли У Хе & Ким Ен Ук, 1997:31-35; 田川孝三, 1944:550
	12,857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國史編纂委員會, 1997:472)
1889	16,654 (농촌주민만을 대상)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國史編纂委員會, 1997:473)
1890	12,857 (우수리 지방)	玄圭煥, 1967:810; Ли У Хе & Ким Ен Ук, 1997:31-35
1892	16,564 (조선인:3,624 러국적한인:12,940)	Граве, 1912:104-5; 玄圭煥, 1967:809; Ли У Хе & Ким Ен Ук, 1997:31-35
	18,654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國史編纂委員會, 1997:472)
1897	23,000(우수리주)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國史編纂委員會, 1997:472); "В районное переселен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на ДВ" (國史編纂委員會 (1997:485)(이하 "переселен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國史編纂委員會 (1997)로 약칭)*; Ли У Хе & Ким Ен Ук, 1997:31-35
	13,998 (연해주와흑룡주의 합)	朝鮮總督府, 1910:504-505
1898	27,000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國史編纂委員會, 1997:472); Ли У Хе & Ким Ен Ук, 1997:31-35
	23,000(연해주)	朝鮮總督府, 1910:504-505; 玄圭煥, 1967:810
1899	27,000(우수리주)	"переселен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國史編纂委員會(1997:485)
	27,700(연해주)	朝鮮總督府, 1910:504-505
1901	32,298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國史編纂委員會(1997:472); "переселен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國史編纂委員會(1997:485); Ли У Хе & Ким Ен Ук, 1997:31-35
1902	32,410 (조선인:16,270; 러국적 한인:16,140)(농촌주민만 대상)	Граве, 1912:105;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國史編纂委員會(1997:473)
	32,298(연해주)	朝鮮總督府, 1910:504-505; 玄圭煥, 1967:810
	32,380	권희영, 1996:50
1906	34,399 (조선인:17,434 러국적한인:16,965)	Унтербергер (1912:2-3), Wada(1987:30) 재인용; С. Аносов (1928). Кореяцы в уссурийском крае. Хабаровск. Книжное дело, p.27. Wada(1987:30)재인용 (이하 Аносов (1928). Wada(1987:30)재인용); Ким Сын Хва, 1965:37

연도	한인수	인용자료
1907	46,430(연해주)	朝鮮總督府, 1910:504-505; "переселен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國史編纂委員會(1997:485)
	45,914(조선인:29,907 러국적한인:16,007)	Аносов(1928:27), Wada(1987:30) 재인용: Унтербергер(1912:2-3), Wada(1987:25) 재인용
1908	45,397(조선인: 29,207 러국적한인:16,190)	Граве, 1912:105; 玄圭煥, 1967:809
	45,497(조선인:29,307 러국적한인:16,190)	Аносов(1928:27), Wada(1987:30) 재인용: Унтербергер(1912:2-3), Wada(1987:25) 재인용
	47,397(농촌주민만 대상)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國史編纂委員會(1997:473)
	47,289(연해주)	朝鮮總督府, 1910:504-505
1909	51,544(조선인:36,755 러국적한인:14,799)	Аносов(1928:27), Wada(1987:30) 재인용: Унтербергер(1912:2-3), Wada(1987:25) 재인용: 金民淳 1965:37
	54,076(조선인:36,996 러국적한인:17,080)	Аносов (1928:27), Wada(1987:30) 재인용: Унтербергер (1912:2-3), Wada(1987:25) 재인용: 金民淳 1965:37
1910	45,048(조선인:31,840 러국적한인: 13,208)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國史編纂委員會(1997:472); Ли Y Хе & 金民淳 1997:31-35
	51,454(조선인:36,655 러국적한인:14,799)	"переселен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國史編纂委員會(1997:485)
	53,608(조선인:36,658 러국적한인:16,950)	Бабинцев, 1959:18-19
	57,289(조선인:39,813 러국적한인:17,476)	Аносов (1928:27), Wada(1987:30) 재인용: Унтербергер (1912:2-3), Wada(1987:25) 재인용: 金民淳 1965:37
1911	59,715(조선인:43,452 러국적한인:16263)	Аносов (1928:27), Wada(1987:30) 재인용: Унтербергер (1912:2-3), Wada(1987:25) 재인용: 金民淳 1965:37
	57,440(조선인:38,163 러국적한인:19,277)	Аносов (1928:27), Wada(1987:30) 재인용: Унтербергер (1912:2-3), Wada(1987:25) 재인용: 金民淳 1965:37
1914	48,722(농촌인구)	Ли Y Хе & 金民淳 1997:31-35
	64,309(조선인:44,200 러국적한인:20,109)	"переселен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國史編纂委員會(1997:485); Аносов (1928:27), Wada(1987:30) 재인용: Унтербергер (1912:2-3), Wada(1987:25) 재인용: 金民淳 1965:37
	63,000이상(농촌인구)	Ли Y Хе & 金民淳 1997:31-35
1917	104,660(9308가구)(조선인:77,463; 러국적한인:27,197)	Бугаев, 1996:8
1922	18,407가구	Бугаев, 1996:8

연도	한인수	인용자료
1923	106,000	"переселен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國史編纂委員會(1997:485)
1925	21,555가구	Бугац, 1996:8
1926	106,764(블라디보스톡관구) 110,000	"переселен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國史編纂委員會(1997:485) Ли Хе & Ким Ен Я, 1997:31-35
1932	154,500(연해주와 우수리주합)	Сним Енг Соб & Ким Герман, 1998:3 **
1934	약 200,000~204,000	Сним Енг Соб & Ким Герман, 1998:10 ***

자료: 이채문(2000a:353-4)의 표와 저자가 최근 알게된 관련 문헌자료를 참가하여 저자가 재구성한 것임.

주 : * 극동지역의 토지청 관리인 마마예프(Мамаев)가 작성한 문서 "Корейский вопрос в ДВК Историческая справка" 와 협장감독인 바진(Бажин)이 작성한 글씨문서 "В районное переселенче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на ДВ"는 1943년 톰스 크에 설립된 러시아국립극동역사문서보관소에 소장된 것이다. 이 문서보관소에는 러시아 혁명을 전후로 하여 극동지역의 관청문서를 대부분 보관해 오고 있다.

: ** 이 자료는 하바로프스크 공산당 문서보관소(ГАХК)에 소장된 문서를 발췌한 것으로서, 1931년 세금에 관련된 자료와 끄라이 집행위원회(краинсполком)를 통해서 이루어진 국적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문서번호: ГАХК № П-2, о и 11, д.233, лл.6-11) (Сним Енг Соб & Ким Герман, 1998:3)

: *** 러시아 극동지역의 소수민족의 과업(О Работе среди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에 관한 야코프(Тен Яков)의 보고서이다 (Сним Енг Соб & Ким Герман, 1998:10).

더욱이 이민 제1기에는 러시아 극동지역이 대부분 비거주지였으므로 한인들은 쉽게 정착할 수 있었다. 한인이주의 이러한 움직임은 1884년 조선과 러시아의 공식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조로수호통상조약(朝露修好通商條約)에 의해 새로운 차원을 맞게 된다. 즉 이 조약에 의하여 조약체결이전에 러시아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3가지 부류로 나누어 각 부류에 속한 한인거주에 대해 상이한 제한조치가 취해졌다(李東彥, 1991:231-4; 고승제, 1971:163-4).

한인의 이주제한에 관한 이러한 규정은 1892년 실제로 이행되어 상당수 한인들은 연해주를 떠나 조선으로 귀국하거나 만주로 이동하였다. 1884년부터 한인이민의 제2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 시기의 이주자들은 농민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상인들 또한 이주의 대열에 포함되었다. <표 1>에 따르면 이 시기에도 한인의 이주규모가 제1기와 비슷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러시아측에서도 오데사와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항로개설로 러시아측의 농민들을 극동지역으로 이주시 키려고 시도한 시기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1890년대는 한인들에 대해 두호프스키 С.М. Духовский 그로제코프 Н.И. Гроде

1908 등 일련의 극동지역 러시아 총독들이 한인의 유용성을 인정하여 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던 시기였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는 한인들의 수가 1892년에는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표 1>에 따르면 1892년 러시아국적을 취득한 한인의 수가 한인국적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민 제3기에 해당되는 1900년대 초에 들어와서는 시베리아철도의 완성과 러일전쟁(1904-5)의 종식과 함께,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본국 러시아인의 이주가 강조되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한 사람은 1905년에 연해 주총독으로 부임한 운데르베르게르(П.Ф. Унтербергер)였다. 특히 그는 한인들의 러시아이주를 황화론적 시각으로 보아(이채문, 2000b), 한인들의 이주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대표적인 조치로서, 먼저 귀화한인들의 권리심사를 강화하고, 어장과 사금장에서 한인노동자의 사용을 금하고, 러시아국적 한인들에 대해 관유지(官有地)의 임대를 금하는 것 등이 있다(이동언, 1991:11).

한인 이주의 제4기가 시작되는 1910년 한일합방과 함께 한인들의 이주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후 실시한 토지조사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를 수탈당한 한인들과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대량으로 이주를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한인이주의 4기가 시작되는 1910년 초반에는 이주한인의 수는 대략 5만 정도였고, 제4기가 종료되는 러시아 혁명기인 1917년경에는 약 100,000만의 이주한인을 해아리게 되었다. 1932년에는 약 150,000의 이주민이, 그리고 1934년 이후 스탈린이 극동지역의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시키기 전까지는 한인 이주민수는 약 20만명선을 넘게 되었다(<표 1>참조).

V. 한인이주자들의 직종

한인들의 러시아 극동지역이주는 토지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농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주한인들의 약 90% 정도가 본국에서처럼 농업에 종사하였는

3) **Киммангем** (1926:458)은 1926년 연해주의 경우 약 88.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적고 있으나 **Граве**(1912)를 비롯한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을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약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본다.

데,³⁾ 이는 농사짓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었다는 점, 상업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대다수 한인 이주민들이 가지고 온 재산이 거의 없는 빈손이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일부 한인들은 빈손으로 들어와서 황무지를 개간하거나 소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본국에서 생활난을 겪심하게 겪은 이들은 몸을 밑천으로 하여⁴⁾ 대부분 농업, 광산, 부두, 산림채벌, 공업, 운수 및 철도분야에 종사하였는데, 농업 다음으로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이 사금장(砂金場) 등에서의 광산노동이었다.

이주한인의 직종의 분포는 지역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흑룡주(Амурская Приморская Область), 「자·바이칼」주(Забайкальская Область), 캄차카주(Камчатская Область) 및 사할린주(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등 지역의 특성상 광업이 성행한 지역에서 한인 노동자들은 광산노동, 사금장, 식품제조업, 철도관련 산업 및 화학공업 등에 종사한 반면, 내륙의 우수리지방(Уссурийская Область) 같은 곳에서 한인 노동자들은 농업의 경작, 수송, 상공업, 관공서 등에서 주로 작업을 하였다.⁵⁾

소련의 신경제정책(НЭП: Нов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политика)이 시행되었던 1927년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주자들의 직업분포에 있어서 축산과 함께 전문적으로 농업에만 종사하는 한인의 비율은 45%, 농민으로서 어업을 겸업하는 호수와 어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어민은 한인 총인구의 25%, 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수는 20%, 그 밖에 소매상인과 밀수업자 등 자유노동 호수를 포함한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전체의 10%로 나타나고 있다(김세용, 1935:268).

또한 도시지역에서는 농촌지역과는 달리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블라디보스톡과 같은 도시에서는 오히려 농업이외의 직종의 비율이 농업비율을 상회하였고, 니꼴리스크에서도 농업과 비농업직종의 비율이 약 71% 대 29% 정도였다(<표 2>참조).

4) 이들 한인들은 아래에서 보듯이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에도 전혀 개의하지 않았다: 「當初부터 生活難으로 由하야 親戚과 墓를 舍하고 非死則生이라는 最後決心으로 渡江한 것이다. 그래서 口腹을 謀營하는 外에는 恥辱도 몰랐다. 又 禮節도 차릴 暫隙이 없었다. 平日에 胡虧라고 恒罵하던 中俄人을 「한것」(上典)으로 삼고 自己는 奴隸의 欽待받는 것을 小毫도 介意치 아니하였다. 勞動神聖이란 問題는 제절로 成立되었다.」(뒤바보, 1920:172).

5) 露西亞通信社發行, 「露西亞事情」第五八輯 및 九二輯(1923), 현규환 (1976:874) 재인용

〈표 2〉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도시의 한인직종

지 역	호수(戶數)	인 구	직 업	
			농 업	기 타
구로테코보 부근	2,000	8,200	7,200	1,000
니꼴리스크 부근	2,345	28,235	19,908	8,327
블라디보스톡 부근	1,177	8,936	4,000	4,936

(자료: 在外朝鮮人事情研究社編, 「北滿及露領朝鮮人事情」, 현규환(1967:823)재인용)

한인들은 농업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직종에 종사하였으나 각 직종별로 분류하기에는 그 수효가 적고 또한 확실하고 충분한 통계나 자료가 없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단편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개괄적인 비농업직종의 분포에 대해서 살펴본다.⁶⁾

- 6) 본 논문에서 왜 대다수 한인들이 종사하는 농업직을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비농업 직종은 직업의 특성상 농업직종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후술하듯이 한인이주민들은 광산노동, 부두하역업을 비롯한 어업관련직종, 자영업, 서비스직 및 단순 노무직 등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직종의 대부분에서는 세탁업 등의 일부 상업직종을 제외하고는 일시적으로 노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들은 직업의 특성상 이동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당히 고정적이라 할 수 있는 농업직에 종사하는 이주민과는 구별되어 연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토지의 분배에서도 러시아 정부의 차별정책이 농업에 종사하는 한인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친 변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비농업직 종사자들에게 거의 해당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비농업직에 대한 연구와 농업직에 대한 연구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또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제적으로 비농업직의 비율은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나 블라디보스톡과 니꼴리스크와 같은 대도시에서 비농업직의 비율은 거의 50%정도에 육박하고 있는 점 또한 비농업직에 관한 독립적인 연구필요성을 제기한다(〈표 2〉 참조).둘째는 연구의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서, 농업에 관한 연구는 비록 단편적이기는 하나 이미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비농업직에 관한 역사적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 한인의 농업과 식민문제를 다룬 연구로서는 Шилкевичъ (1911), 그리고 부분적이기는 하나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인 농업문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Ким Сын Хва (1965), Граве (1912), 국내서로는 이채문 (2000c), 박진환(1998), 玄圭煥(1967), 이상근(1996) 및 권희영(1993) 등을 들 수 있으나, 한인의 비농업직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필요성 측면에서도 비농업직에 관한 본격적 연구가 절실히 실정이다.
- 7) 본 자료의 발행연도는 알 수 없음.

1. 광업 관련 직종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들 가운데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90%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었던 직종은 바로 광산노동이었다. 광산 노동 가운데 사금광(砂金礦)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사금채취를 위하여 한인들이 고용된 것은 1891년 흑룡강회사의 사금장에서 일한 것을 시초로 하여 1892년 470명, 1893년 1,050명, 1906년 6,200명으로 증가하였다(Граве, 1912:116). 당시 사금장에서 일하는 중국인 근로자의 수도 이와 비슷하였는데, 지역 별로 볼 때 한인광산근로자가 가장 많은 주는 아무르주였고 그 다음이 연해주였다. 아무르주에서는 1890년에 3,456명의 광부수가 17년 후인 1907년에는 약 30,000명으로 증가하였다(〈표 3〉참조).

19세기말과 20세기 초기 황인종 근로자들의 급격한 증가는 극동러시아당국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급기야 1902년에는 사금장 노동자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즉 1902년 한인과 러시아인 광산노동자의 비율을 25%와 50%로 각각 정하고 또 황색인종의 근로자들을 고용할 경우에는 일일이 특별한 허가를 얻게 하였다(Граве, 1912:116-117). 특히 한인배척정책을 취하였던 운데르베르제르 총독은 1907년에 한인광산노동자의 수를 2,600명을 제한한데 이어, 1908년부터는 한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금장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명령하였고 급기야는 사금장의 한인들을 모두 추방하도록 하는 훈령을 시달하였다(Граве, 1912:116-7). 이리하여 1906년 금광장에만 5,865명의 한인들이 고용되어 있었으나 1909년에는 현저히 감소되어, 광산에서 차지하는 한인노동자들의 비율이 1906년 29.1%에서 1910년 0.7%로 줄어 들었는데(КНМ Сын Хва, 1965:46) 이러한 감소추세는 〈표 4〉에서 보듯이 1906년에서

〈표 3〉 아무르주의 한인광부현황

연 도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광부수	3,567	4,247	4,362	6,654	7,215	12,982	13,218	13,005
연 도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7
광부수	10,127	9,000	11,755	9,565	10,000	12,000	14,900	30,000*

자료: 統監府外務部(1907), 「極東露領に於ける韓國人の狀態」p. 20, 현규환(1967:867) 재인용

주: * 제야(Зея) 지역부근의 금광지역에서의 광부수

〈표 4〉 채금장 한인 노동자의 수(1906-1910)

광산구	1906	1907	1908	1909	1910
아무르	477	332	406	-	-
부레인	2,779	1,428	1,931	359	-
연해주	1,859	1,667	-	-	-
제이	750	1,800	2,500	1,800	150

자료: *Ким Сын Хва* (1965:46)

1910년에 걸친 채금장 한인 노동자의 수에 관한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러시아족의 이러한 조치로 1909년 아무르주의 한인광산근로자 2,000명과 연해주에 있는 우에즈드(*уезд*: 郡)의 한인광산근로자 5,000명은 사금장에서 떠나야만 하였고. 그 자리는 중국인근로자들이 차지하게 되었다(*Граве*, 1912:116-117). 그 결과 아무르주의 경우 1914년 광산근로자의 수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인이 19,300여명, 러시아인이 2,000여명, 한인이 1,300여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조선총독부, 1918:59),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정치 사회적인 불안으로 금광업이 부진하여 금광업에 종사하던 한인근로자들이 대거 농업으로 직종을 바꾸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인광산근로자의 감소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광산업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특히 러시아의 일부언론에서는 한인의 추방으로 입은 타격 때문에 러시아 극동의 금광업에서 러시아죄수를 사용해야 할 정도라고 하면서 한인들은 러시아에 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사금장에서의 한인의 계속적인 고용을 주장하고 있었다.⁸⁾ 또한 한인근로자의 월 생활비가 황색인종 가운데 가장 높으므로 이러한 한인의 높은 소비성향은 러시아 경제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즉 한인광산근로자의 매월 생활비는 대략 18루블로서 이것은 러시아인들의 소비액수인 23루블보다는 작지만 중국인광산근로자의 월 소비액수 8루블보다 훨씬 더 높으므로 한인배척반대론자들은 황색인종 중 한인이 러시아에 가장 유익하다고 주장하고 있다(*Граве*, 1912:118). 그리고 한인광산근로자들은 노동자로서의 능력이 러시아인에 비해 25~30% 낮으나 중국인에 비해 20~30% 높으며 한인들은 대개 품행이 좋고 성질이 온순하여 러시아인과 잘 화합하

8) *Новое Время* 1910. 1. 10. 국사편찬위원회(1967:512-13) 재인용.

여 러시아인과 힘을 합하여 조합을 만들기도 하였다.⁹⁾

특히 사금장에서 일하는 한인들을 ‘금점(金店)군’이라 불렸는데, 이들은 광산 주인인 러시아인들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아 사금채굴에 종사하였는데, 채굴한 사금에서 그 동안 공급받은 양식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이들의 소득이 되었다. 그러나 보통 광산의 러시아 주인에게 공급받은 양식의 가격은 시가의 배로 계산하고, 이들이 광산의 주인에게 치르는 사금의 가격은 시세의 절반으로 계산하므로 항상 가난속에서 허덕였으며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한인의 저축심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금광을 연지 30여 년 동안에 한인으로서 부자가 된 자는 거의 없었다(뒤바보, 1920:174-5). 한인들 중 이러한 ‘금점군’으로 정착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수는 일 만명 이상이 되며,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동 ‘금점군’의 수도 적지 않았다(뒤바보, 1920:174-75).

2. 어업 관련 직종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각국 상선이 빈번히 출입하는 관계로 선박수요가 급증하여 하루에 배1척당 1백 루블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이 때문에 재력있는 한인들은 귀화한인의 명의로 배를 대여하여 큰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1900년 이전까지 대부분의 어업관련 한인들은 주로 블라디보스토크 부근이나 우수리강 및 흑룡강하류 등에서 어로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그 어획량은 미미하였다. 그 당시 1895년에서 1899년까지의 사이에 극동지역의 피요트르(Петр)만에 있던 한인 선박의 수를 보면 1895년에 160척, 1896년 140 척, 1897년 151척, 1898년 134척, 1899년 152척 등이었다.¹⁰⁾ 당시 부두의 하역작업에 많은 인부가 필요하였고 한인들은 러시아의 일부청부업자에 고용되어 작업을 하

9) 한인노동자들이 사금장에서의 추방당시, 사금장에서의 한인들의 생활에 관해 총독의 자문을 받은『브레야』구의 경찰서장의 보고서 또한 이러한 한인의 소비성향과 잘 어울리는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인근로자를 사금장에 일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朝鮮人は賃銀が増やすに従つて生活程度を上げて行く。彼等は速かに露人に慣れ、露國の風習に化し、喜んで基督教に改宗し露國籍に移る。之等の点は支那人と全然反対である。黃色人種の中では朝鮮人が一番好い。朝鮮人には砂金場の就業を許可してやりたい……」(Граве, 1912:121).

10) 統監府 外務部 (1907) 『極東露領に於ける韓國人の狀態』, 현규환(1967:876) 채인용.

였으며 또한 선박내에서 선장의 지시에 의해 일하는 인부들이 많았다. 통계에 따르면 1913년 이들 한인어업노무자들의 수는 약 1,059명이었고, 반면 러시아인 어업노무자의 수는 486명으로 나타나고 있고,¹¹⁾ 당시 이들 한인어업노무자들의 임금은 1914년에서 1916년까지는 대략 1루블 50꼬뻬이카였다(*Граве*, 1912).¹²⁾

고기잡이에 종사하는 한인들의 수는 1904년경에 약 3,000명까지 이르렀으나 1905년부터 고기잡이가 외국인들에게 금지되었기 때문에 러시아국적을 가지지 않은 한인들은 고기잡이를 중단하여야 했고,¹³⁾ 1910년경에는 938명의 한인들만이 어업에 종사하였다(권희영, 1993:181).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어업에 종사하던 한인인부들은 러일어업협정에 의하여 러시아인들과 일본인들에게 고용되어 연해주 근해뿐만 아니라 멀리 어류의 서식지이자 세계적 어장으로 이름난 사할린과 캄차카주의 연안 고기잡이에 고용된 사람도 많았다. 이들 중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상주하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북한지방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일시적으로 온 인부들도 있었다. 특히 남부 우수리지방의 포세트만을 중심으로 한 근해는 북한과 인접한 관계로 한인들에 의한 어업이 제일 번성하였고,¹⁴⁾ 이들 어장에서

11) 南滿洲鐵道調查課(1922), 「露領沿海地方及北樺太」(第一輯), 현규환(1967:876) 재인용.

12) 당시 어업과 관련된 한인노무자들을 세부적으로 <어리바잇개>와 <세찬꾼>으로 나누기도 한다. <어리바잇개>는 어장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었고 <세찬꾼>들은 부두에서 배를 타고 화물을 싣거나 하역하는 노동자들로서 노동중에서 가장 힘드는 노동이었다(뒤바보, 1920:176-9). 이와 관련하여 당시 임금과 환율에 관해 살펴보면 1914년에서 1916년까지 세계 제1차 대전 당시 선박출입이 빈번하여 부두 하역작업이 활기를 띤 기간동안 한인 어업노무자들의 임금이 대략 1루블 50꼬뻬이카였고 또한 부두 <세찬꾼>의 일당이 1원20전 내지 30전 정도라는 기록 등을 보면 당시의 루블과 원화의 정확한 환율은 알 수 없으나 극동러시아지역에서 원화와 루블화의 가치가 거의 비슷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듈다. 그러나 농업노동자들의 임금은 이보다 적어 러시아인의 경우 일당이 0.6~1.05루블, 한인과 중국인의 경우는 0.45~0.80 루블 정도였고(식비 불포함)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현규환, 1967:872). 반면 광산노동자의 경우는 이보다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쟁내인부는 3.80~4루블, 일반인부의 경우는 1.75~2.20루블이었다(朝鮮總督府, 1918:59).

13) 한인노동의 곤란에 대해서 당시 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금광에서 로동 후 는 한인을 축출 훈다'는 문제는 아직국회의 경의를 맛초지안이 후여스나 결과가 엇더케 될 눈지알 슈업거니와 룽업과 어업은 외국사람에게 허후지안이 후는 장정을 의지 후여 한국사람에게 영영 허급지 안이 후게 작당 후였다 후며 . . .」『大東共報』, 1909. 3. 21.(제24호), 「韓人勞動의 困難」, p. 3.

14) 이들 한인 어업종사자들의 정확한 분포와 수효는 알기 어려우나 지역주민의 약 80%가 어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며 이들은 블라디보스톡항과 아무르강 연안, 그 맞은편의 우수리만(灣) 등에 거주하였다(현규환, 1967:876-7).

고기잡이에 나서는 인부들의 보수는 1어기(漁期) 또는 매월의 보수제가 있고, 또 어획율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도 있었다. 러시아인 또는 귀화한인의 명의로 어업에 종사한 한인들은 연안어업에 종사하여 어획물을 러시아 극동지방의 시장에 판매하였고, 또한 북한지방에도 상당량을 수출하였는데, 이들은 심지어 러시아인들이 어획한 것들도 사들여서 같이 북한으로 수출하였다(조선총독부, 1918:70-75).¹⁵⁾

성어기(盛漁期)가 되면 함경도 연안에서 매년 수백 명씩 한인일꾼들이 몰려와 연간 270만원의 어획고를 올렸고, 이것들 모두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하여 조선이나 중국으로 수출되었다(朝鮮總督府, 1918).

그러나 한인어부들의 대부분이 빈곤층이었으므로, 이들에 의한 어업조합¹⁶⁾의 활동은 미미하였다. 한인의 어업조합수는 1925년의 18개에서 일년 후인 1926에는 41개로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가난한 어부들은 이들 조합에 불입해야 할 10원의 주식대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서 이를 어업조합은 직업동맹에 원조를 청하여 대부받은 182,909원에 의존하여 활동하고 있었고, 또 조합의 활동도 단지 성어기에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현규환, 1967:877).

3. 자영업종

한인들의 자영업종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잡화상, 세탁업, 숙박업, 연

15) 당시 한인어업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일부 언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포세트』港에는 豊漁를 맞아 蝦集하는 出漁韓人の 帆船이 六十隻이고 陸地에 移住韓人 漁家數가 七十五戶에 達한 바 港內의 大布網이 三統中 二統은 韓人經營이오 一統은 韓人과 露人의 共同經營인데 누구이든 露人的 이름으로 入札하여 漁業權을 얻었다. 清津을 中心으로 한 沿海 ?의賣出은 一段落을 告한 바 總收入額은 三萬三千? 價格은 八十萬圓에 達한다”(東亞日報, 1929. 7. 7. p. 1, 「포港豊漁, 朝鮮漁業者蝦集」).

16) 직업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었고, 일자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기타 노동보험계약, 병과 부상의 경우 치료비와 봉급, 주민의 보증, 박물관 및 도서관 등의 출입에 특전을 부여 받았는데, 러시아 극동지역의 직업조합운동은 이미 1917년 이전에 시작되어 러시아제정의 몰락 이후 급속히 확산되었다 (勞農露國の極東地方の勞動統計局, 1923:54-60, 194-224). 노동자들은 숙련공이든 비숙련공이든 관계없이 조합원이 되면 직업의 기회를 얻게 되며 가입하면 보통 3개월의 노동의 준비기간을 거쳐 해당 조합의 정회원이 되었다. 한인들은 러시아인들과 함께 조합을 조직하였으며, 예를 들어 농업 같으면 코뮌 *КОММУНА*, 콜호즈 *КОЛХОЗ*, 혹은 소포즈 *СОВХОЗ* 등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金世鎔, 1935:268).

초상, 건재상, 정육점, 음식점, 세탁소, 이발소 등이 있었다 (조선총독부, 1918:235).

규모면에서 볼 때, 상업에 종사하는 대부분 한인들의 상황은 매우 영세하였고, 자금이 넉넉하지 못하였다(표 5). 예를 들어 우수리 지방의 경우 한인 소매점에 총 71명이 종사하여 1개 소매점당 약 1.4명이 종사하였을 정도로 규모가 영세하였다(현규환, 1967:877). 따라서 이들은 러시아군의 청부를 받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장에 정육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일부 한인들 이외에는 모두가 잡화상이었고, 한인을 주로 상대하였으며 물품의 구입은 한국이나 현지에서 하였다 (현규환, 1967:875). 이들은 대부분 한인 거주지에 개점하여 한인을 상대로 하였는데 전체적인 한인의 인구수에 비해 한인 상점이 극히 적었다. 제한된 통계이기는 하지만, 표 5에 따르면 스라비얀카에서는 30가구가 거주하는데 잡화점 7호와 육류점 1호가 있고, 체르니고후카에서는 130가구가 거주하는데 잡화점의 수효가 약 10호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한인 상점이 비교적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한인 상점 수가 거주가구수에 비해 아주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노브키에프스크에서는 1200가구가 거주하는데 잡화점이 겨우 6호만 있을 뿐이고, 얀지혜지역에서도 600가구가 거주하는데 잡화점이 겨우 8호만이 있을 뿐이었다.

〈표 5〉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인 호수, 인구 및 점포상황(1907년 경)

지 역	호수(戸數)	인구	점포상황	*점포율(%)
블라디보스토크市	994	10,400	주류판매업 6호: 잡화점 20호	26/994=2.6
나콜리스크市	130	1,500	육류 및 燕麥청부상 1호: 잡화점 2호	3/130=2.3
체르니고후카	130	1,000	잡화점 약 10호	10/130=7.7
스라비얀카	30	200	잡화점 7호: 육류 1호	8/30=26.6
포세트	415	2,000	잡화점 10호	10/415=2.4
부루시	20	650	잡화점 5호	-
아지미	30	815	잡화점 3호	-
노브키에프스크	1200	4,200	잡화점 6호	6/1200=0.5
얀지혜	600	3,000	잡화점 8호	8/600=1.3
블라고베시첸스크	14	30,300	잡화점 1호: 麵麯 (국수와 빵)소매점 5호	-
나콜라에프스크	-	1,778	잡화점 1호	-

자료: 統監府 外務部(1907)『極東露領に於ける韓國人の状態』, 현규환(1967:87, 812-35) 재인용

주: * 점포율(점포수/총호수)은 본 논문의 저자가 계산한 것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작성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혁명 직전인 1916년 러시아 극동지역의 도시거주 한인들은 농업을 제외하고 자영업중에서 세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현규환, 1967:814-15).

숙박업의 경우 한인이 경영하는 것은 완전히 한국사람들만을 위한 것으로, 한국에서 새로 온 사람이나 한국으로 귀국하는 사람들이 주로 여인숙을 이용하였는데, 블라디보스톡에 200개, 니꼴리스크에 40개, 그리고 기타 한인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몇 개씩 있었다. 숙박료는 하루에 약 50꼬뻬이카였고, 한 달에는 약 10루블에서 12루블 정도였다(현규환, 1967:875).

그리고 연초상(煙草商)은 주로 연초와 종이를 구매한 후, 궐련을 제조하여 일본인이나 러시아인들을 상대로 행상을 하였다. 이것은 한인들간에 좋은 직업으로 간주되어 적지 않은 한인들이 담배말이꾼으로 종사하였는데,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러시아의 중류층 이상의 사람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 블라디보스톡, 송왕령, 화발포, 니꼴리스크, 블라고벤센스크, 치타 등지에서 약 500명이상의 한인이 여기에 종사하였다(뒤바보, 1920:175-6). 하루의 수입은 평균 70 내지 80 꼬뻬이카에서 2루블까지로서 개중에는 청부를 맡아 1개월간에 100루블 이상 버는 사람도 있었다.

정육점의 경우 블라디보스톡이나 노보키에프스크 등지에서 러시아군대에 육류를 공급하는 한인 청부업자들 중에는 대도시의 시장에 번듯한 자기 소유의 점포를 가지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거대한 군사도시인 노보키에프스크에서는 약 1천명의 한인과 중국인 민간인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한인들은 인구구성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곳에서 일부 한인들은 러시아 군대에 육류를 계약 판매함으로써 중국인을 놓가할 정도로 부를 축적하였다. 이들은 중국의 만주로 가서 여윈 동물을 찬값에 매입하여 살이 짜도록 키워서 러시아 군대에 비싼 값에 되팔아 많은 이윤을 남겼다(Bishop, 1898:264-5). 그 밖에 음식점은 선술집과 같은 곳으로 보드카나 한국소주 및 2~3가지의 안주를 진열하는 정도의 규모로서 블라디보스톡에 10개가 있었다(현규환, 1967:875-6).

4. 서비스 직종

서비스직종에 포함될 수 있는 직종으로서 청부업자, 관청서기, 통역관, 도박업자, 점원 등이 있는데 이 직종에 대해서는 독립신문에 연재된 아령실기(俄領實記)(뒤바보,

1920: 173-79)의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청부업자는 당시 러시아어로 뾰드랴치크(подрячик)로 주로 알려졌는데 이는 청부업자나 어용상인(御用商人)을 지칭하는 말로서 이들은 일터에 삽일꾼을 모아 주거나 관청이나 군대에 물품을 공급하는 일에 종사하였고, 철도의 작업장이나 어장(漁場) 등지에서 일꾼 수천 명씩을 거느리면서 이들이 받은 품삯을 일꾼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그 중 일부를 차지하였다. 예를 들어 선박이나 건축공사장의 인부를 고용하면서 이들 인부들이 받는 70~80 꼬뻬이카¹⁷⁾에서 2루블 정도의 일당에서 10꼬뻬이카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인부들에게 나누어주었다.¹⁸⁾

비사리라고 알려진 사람들은 러시아 중학교의 학력을 가지고 관청에서 월급을 받고 근무하는 서기(書記)를 말하는데 이들은 아래의 통사(通辭), 즉 로어 통역관 보다 좀 더 고결하다고 하였으며, 다만 이들은 모국어에 무지한 경우가 많았다.

통사(通辭)는 러시아어에 익숙한 로어통역자들을 말하는 데, 그 종류가 다양하였다. 이들은 주로 관청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특히 경찰서에 소속된 통사들의 횡포가 극심하였다. 이들은 조국문명을 경시하고 동포들을 무시하였으며 선박이나 기차 등지의 작업장에서 동포들에게 끼친 피해는 대단하였다.

도박업자들은 속칭 '사바오' '야보' '야호이' 등으로 불리었는데 이 도박업을 개점한 자들은 모두 상당한 자본을 가진 한인들로서 블라디보스톡의 '신한촌' 등에서 동업자들과 함께 주재지의 경관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공공연히 도박장을 개점하고 있었으며 그 수는 약 20명 정도였다(현규환, 1967:876).

점원이나 판매원 등은 뾰리까즈시크(п р и к а з ч и к)로 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는 러시아 고등소학교를 졸업하거나 몇 년간의 상업경력이 있는 자는 백원 정도의 많은 월급을 받는 자도 있었다.

5. 기타 단순 노무직

기타 단순 노무직에는 담배말이꾼, 지게꾼, 벌목업자, 질등이꾼, 아재비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주는 디스포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17) 1 꼬뻬이카(копейка) = 1/100 루블(рубль)

18) 総監府 外務部 (1907) 『極東露領に於ける韓國人の狀態』, 현규환(1967:876) 재인용.

담배말이꾼은 궐련을 손으로 만드는 사람을 일컫는데, 잘 만드는 사람들의 경우 하루 수입이 30 내지 40원 가량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이들 담배말이꾼의 소득이 가장 높았다. 이들은 주로 러시아 중류층의 수요에 맞추어, 해삼위, 송왕령, 화발포, 니꼴리스크, 블라고벤센스크, 치타 등지에서 일하였으며 그 수는 5백인 이상이었다(뒤바보, 1920:175-6).

지게군은 지게를 이용하여 골목길을 다니면서 화물을 운반하여 주는 일군들로서, 품삯은 화물의 무게와 운반거리에 따라 달라지나 하루에 30~40꼬뻬이카에서 80~90꼬뻬이카를 벌어들였으며 블라디보스톡에만 약 4,000명이 있었다. 그러나 노동의 실적에서는 한인들이 중국인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서는 러시아인들이 지게군 회사를 설립하여 그 소속 일군의 수가 80명에 달하는 때도 있었다.¹⁹⁾

별목업자는 텁질과 별목을 주로 하면서 블라디보스톡 부근의 니꼴리스크, 스파스카야 등에서 하루에 70~80 꼬뻬이카를 벌었고, 나코라에프스크의 별목업자들은 임금을 받고 타인에게 사역을 하는 자와 손수 별목하여 이를 판매하는 자들이 있었다. 보통 1싸지엔²⁰⁾을 별목하는데 1루블의 임금을 받았고 또 장작패기는 장작 1싸지엔에 80꼬뻬이카를 받았는데 보통 하루에 1싸지엔의 장작을 패는 것이 통례였다.²¹⁾

질등일군은 우수리 철도와 통칭철도(東清鐵道)를 건설할 당시 일을 했던 사람들로서, 당시 임금을 많이 받았으나 청부업자인 뾰드랴치크에게 임금을 뺏기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고, 또한 러시아 통역의 채찍하에서 모욕을 당한 일도 적지 않았다(뒤바보, 1920:176).

아재비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인 농가의 부인들이 고용하는 일꾼을 말한다. 이들은 모국에서 와서 농가의 주인과 1년간 일하기로 계약을 하며, 보통 샷으로 백원을 받았는데 이들은 봄에 경작지를 경작하거나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은 물론 겨울철에는 도르래로 물을 길어 올리는 급수(汲水)일까지도 하곤 하였다(뒤바보, 1920:177).

디스포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자로 흔히 보이로 불렸는데, 다음의 3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서양요리의 상식이 풍부하여 여관이나 기차, 배 등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금광이나 어장 등에서 종사하고 한꺼번에 샷을 받는 사람이고, 마지막으

19) 『大東共報』, 1909. 3. 21(제24호), 「韓人勞動의 困難」, p. 3.

20) 1싸지엔(сажень)은 약 2.14미터임

21) 統監府 外務部 (1907) 『板東露領に於ける韓國人の狀態』, 현규환(1967:873) 재인용.

로는 개인 가정의 주방일을 전담하여 고용된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매달 10원 가량의 수고료를 받는 사람이었다(뒤바보, 1920:177). 이외에도 한인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종사하였던 직종은 소작인뿐만 아니라 목수, 석공, 대장장이, 미장이 등 다양하였다.²²⁾

VI. 토론 및 함의

여기서는 본 논문의 서두부분에 언급한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통합적 모형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통합적 모형에서는 이주민의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유출국에서의 공급적 측면에서의 요인들뿐만 아니라 인구유입국에서의 상황과 관련된 수요적 측면에서의 요인들을 모두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 이주민의 직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유출국에서의 인적자원의 공급적 측면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한인의 농업중심적 성격, 이주시기에서의 조선에서의 사회경제적 모순, 직업에서의 사농공상과 같은 조선에서의 문화적 요인 및 한인이주민의 자급자족적 성향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대부분의 한인이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였고 비농업직종에 종사한 비율은 소수였다는 점이다. 물론 블라디보스톡과 같은 도시지역에서는 비농업종사자가 농업종사자보다 더 많았으나 대부분의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한인들은 농업과 관련된 직업에 주로 종사하였다. 이것은 아주 한인들에게 있어서 농업 이외의 기술이 거의 전무하였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한인들이 아주하기 이전 송출지에서의 원래 직업이 농업이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또한 조선시대의 사농공상의 직업의식에 따라 상업을 천시하는 경향이 이주지에서의 상업에 대한 경시 풍조로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이주민 유출국에서의 문화적 전통이 유입국에서의 이주민의 직업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Frazier, 1957; Freedman, 1959; Sowell, 1975)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2) 그 외 여러 가지 직업이 있었음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인신문의 광고를 보면 알 수 있다. 즉 『勸業新聞』에서는 한인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기 위한 광고로서 다음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를 내기도 하였다: 「목수업 후 눈이, 둘깍눈업 후 눈이, 훑파눈업하는 이, 농업 후 눈이, 야창업 후 눈이」(『勸業新聞』, 1912. 12. 29(제37호), 「布告」p. 4).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한인이주가 시작되었을 당시 조선에서의 극심한 기근과 사회적 모순이었다(이체문, 2000a). 특히 1969년과 1970년에 발생했던 함경북도 지방의 대흉작으로 이 지역주민들은 초근목피로 연명을 하였으나(KNM Сын Хва, 1965; 현규환, 1967:800; 임계순, 1987:583-84)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이주를 금하는 강력한 법을 시행하였으나 한인 이주민들은 이를 무릅쓰고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로 건너왔다.²³⁾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순 또한 한인의 이주를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의 계기가 된 것은 조선후기의 생산력의 증대로, 일부 농가에서는 풍흉에 관계없이 정액지대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경작지를 확대하여 지주나 부농이 될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농가는 경작지를 잊고 유이민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田川孝三, 1944; 임계순, 1987:584). 이는 결국 한인의 러시아이주를 촉진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하게 된다.

둘째, 전체 한인의 가구 수에 비해 한인 상점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한인가정에서의 자급자족적인 성향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한인 이주민에 의한 생산은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신에 필요한 것은 자기가 만들어 사용하였기 때문에 수공업에 있어서 큰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특히 각 가정에서 필요한 1차 필수품을 모두 가족 성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한인들은 농업에 필요한 도구들, 즉 옷, 짚신, 바구니, 벗자루, 밧줄, 둋자리 등도 모두 만들어 사용하였고, 필요하면 이들은 목수일에서 수리공의 역할까지 하였다.²⁴⁾ 따라서 이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셋째,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 이주민의 또 다른 특징은 대부분의 한인들의 직업은

23) 국경지방 주민들의 월경(越境)을 막기 위해 향약점고(鄉約點考)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오가작 통제(五家作統制)를 엄격히 시행하여 각 읍의 약장(約長)이 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장정(壯丁) 수효를 수시로 점검하여 관가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월경을 막기 위해 순조 말경에서 철종 원년 사이에 무산군(茂山郡)의 서면임강대(西面臨江垈)의 파수대에서 시작하여 경흥부조산보(慶興府造山堡)의 파수대까지 다음과 같이 총 67개의 파수대를 설치하였다: 茂山(3), 會寧(9), 鐘城(20), 穩城(15), 廣源(14), 廣興(7) (田川孝三, 1944:479-480).

24) Н. Пасъкни. "Кореяцы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Журналъ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родного просвещенія.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904). 李尙根(1996:195-6) 재인용.

한인을 상대로 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현규환, 1967:875). 즉 대부분 한인들의 거래상황을 보면 한인간 거래는 현금거래였고,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고, 고리대금업자가 있었으나 금리가 5푼 내지 1할 정도로 극히 비싸 소자본가들은 도저히 이용할 수 없었다(현규환, 1967:875). 뿐만 아니라 이들 한인상인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군대에 육류를 공급하는 일부 한인 육류상 및 러시아인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뾰드라치크(*подрядчик*)와 같은 직종을 제외하고는 러시아인과의 거래는 거의 없었고 기껏해야 한인들간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데 급급하였다. 이들 한인들은 대부분 한인을 상대로 하는 잡화상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주민들이 거래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를 전제로 하여, 이러한 수요가 주로 소수민족의 동족들에 의해 채워지게 된다는 인종적 특수시장이론(ethnic enclave theory)이 한인 이주민의 직업구조를 설명하는데 설득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종적 특수시장이론에 의하면 이주민들은 자기와 같은 종족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만의 상품에 대한 독점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Light, 1972; Portes and Zhou, 1992)고 주장하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한인들은 대부분 한인을 상대로 하는 잡화상이었고 물품의 구입은 러시아 현지에서 또는 모국인 한국에서 이루어졌다.

넷째, 동족간의 결속력과 직업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한인들은 중국인들에 비해 동족간의 신용, 협동이나 단결이 약한 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는데 (이상근, 1996:183) 이 때문에 한인에 의한 소규모 상점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 점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중국인들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특히 중국인들의 강력한 길드체제와 결속력은 러시아인들을 이들 품목에 대한 교역에서 축출할 정도로 강력하였다(Bishop, 1898:259). 중국인들은 한인들이 주로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토를 만드는 등 농사일에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장사에 눈을 돌려 한인들이 거주하는 농촌에 상점을 개설하여 한인을 상대로 일년에 몇 천원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었다. 블라디보스톡지역의 경우 중국인은 강력한 동족간의 결속에 의해 이 지역의 대부분의 상점을 소유함으로써 육류, 어류, 도박, 과일, 야채와 기타 상하기 쉬운 일용품을 독점하였고 러시아인들과 독일인들에게 물건을 싸게 팔았기 때문에 그들의 장사는 점점 커져 갔다.

극동지역의 한인신문에서 조차 한인들이 더 많은 상점을 개설하여 중국인 상점대신에 한인상점을 이용할 것과 한인들이 신용을 쌓으므로써 적극적 상업활동을 권장할 정도로 블라디보스톡 한인거주지내 한인상점수는 감소하였다. 또한 한인들간의 신용

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일부 한인들은 한인상점 보다는 외국인들의 상점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일이 많았고,²⁵⁾ 이 때문에 가뜩이나 영세한 한인들의 상점은 갈수록 감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이주민의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유출국에서의 공급적 측면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이주민의 통합적 모형에 포함되는 것은 이주민의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유입국의 상황이다. 특히 이주민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유입국의 수요적인 측면에는 러시아의 이민정책을 들 수 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러시아의 이민정책은 상당한 변화를 겪었는데, 외국이주민의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했던 초기 러시아 극동의 경영정책이 후기에는 이주민을 제한하고자 했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여기서는 주로 이주민유입국인 러시아의 이민정책과 이주민의 직업에 영향을 미친 지역별 상황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러일전쟁 이전까지의 러시아의 정책은 노동력이 부족한 극동지방에서 인내심이 강하고 저임금으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한인이나 중국인에 의한 노동력을 선호하는 것이었다. 이는 또한 기껏해야 마부로서 말을 모는 정도로만 노동을 하면서, 힘든 노동을 참지 못하는 러시아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력의 선호정책은 증가하였던 한인의 사금노동자와 어업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수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주에 대한 우호적 정책은 러일전쟁 이후 황인종 노동자들의 수적 증가와 극동에서의 팽창하는 일본의 세력에 대한 우려의 감정이 표면화되자 이주민에 대한 제한정책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전환은 즉시 한인 이주자들의 직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정부에 의해서 내려진 한인이주민의 특정 직업에 대한 강력한 제한조치의 예로서는 운데르베르제르총독의 명령을 들 수 있다. 운데르베르제르총독은 1906년 5,865명이나 되던 사금장에서의 한인근로자들을 1909년 금광에서 모두 퇴거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사금장에서 일하던 한인이주자들은 도시나 촌락으로 숨어들었고

25) 이러한 한인의 신용문제에 대해서 당시 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본항한인 거류디 니에 한인의상법이 십여가되더니 지어금년 후 야는 다섯에 지나지못 허니 작년에 비교 허면 삼 빙나 감 훈지라. 그원인을 들은즉 상민과 평민사이에피 츠신용을 일신 드에 동포들이 한인의 상법을 지나가서 외국인의 상법에만 가서 미 미 허 눈고로 상업이 이 길 치 쇠피 허 약다 허니 참가석 허 일이거니와 우리의 바로 눈바눈 피 츠신용을 엊어 상업을 다시 흥복 허면 허 복이 되겟더라」『大東共報』, 1909. 4. 4.(제28호), 「韓人商業쇠퇴」 p. 3.

대신에 중국인들이 이를 한인근로자들을 대체하여 이곳에서 일하였다 (Граве, 1912:116-7; Ким Сын Хва, 1965:46). 또한 어업에서 한인들의 축출조치의 여파는 1904년경 약 3,000여명이나 되던 한인 어업노동자들이 1910년에는 겨우 938명 만이 남아 있을 정도로 한인근로자의 직업에 미친 영향은 컸다(권희영, 1993:181).

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민정책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에 거주하였던 한인들은 그들의 직업과 국적²⁶⁾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예를 들어 많은 비농업직 한인들이 거주했던 블라디보스톡에서는 1909년 3월 22일 한인과 중국인은 다음의 조건들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라도 해당될 경우에는 시의 어느 지역에서든지 거주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꾸뻬로프스카야 파두’ (Куперовская Падь)라는 지정된 특별지역 이외에는 거주할 수 없도록 하였다: 1)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2) 블라디보스톡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3) 1등, 2등, 3등의 영업감찰을 소유하고 블라디보스톡시내에서 상업을 경영하는 자이거나 4) 3항에 해당하는 영업자에 의해 고용되는 점원과 고용인이어야 했다.²⁷⁾

이같은 한인에 대한 제한조치는 하바로프스크나 니꼴리스크 우수리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하바로프스크시에는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한인들의 거주지를 제한하였고, 또한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직업에 따라 거주지를 제한하였다. 당시 하바로프스크에서 작성된 문서²⁸⁾에 의하면, 한인근로자는 시내거주를 허용하지 않아 낮에는 시내 건설장이나 기타 작업장에 있을 수 있으나 야간에는 시외에 있는 한

26) 1913년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한인 노동자는 정부기관과 공장에서 24.6%, 개인기업에서 75.4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국영기업에서는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한인만을 고용하였다(Ким Сын Хва, 1965:46).

27) Система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Постановлений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й Городской Думы за 1901-1912 г.,(1913:678), Patsiorkovsky et al.(1995:569)에서 재인용. 또한 하바로프스크시내에 거주하려는 한인과 중국인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아래의 규정이 시행되어 다음에 기재된 자에 한하여 시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가복(家僕)으로서 시내주민에 使役되고 있는 清人과 韓人, 단 1가족 당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2) 각종 건축사업종 이에 사역(使役)되는 양국인, 단, 상기 守衛의 居所를 특설할 것, 3) 夏期棟瓦제조소에 사역되는 자, 또는 동기(冬期) 守衛로 同제조소에서 留하는 자, 4) 舊市街의 守衛인 양국인 且 증기제분소와 주철소(鑄鐵所)에서 使役되는 양국인(統監府外務部(編), 「極東露領に於ける韓國人の状態」(1907), 현규환(1967:883-4) 재인용).

28) 톰스크 문서보관소 소장자료인 “중국인과 한인들을 특별구역에 이주시킨 문제에 대하여” (О населении китайцев и корейцев въ особыхъ кварталахъ города) 이상근 (1996:114-5) 재인용.

인마을에 거주하여야 했고, 중국인과 한인마부들은 시내에서 거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또 하바로프스크시의 주민들이 한인과 중국인을 하인으로 고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그 수는 개별 가구당 2인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 특히 음식과 관련된 식료품생산공장, 예를 들어 맥주공장, 과일탄산수공장, 마카로니공장, 제분소, 소세지·빵·과자 제조시설 등에서는 유럽인 만을 노동자로 고용해야 했고 한인들을 고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한인에 대한 규제는 전염병의 발병과 같이 이주지에서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더 강해졌다. 특히 니콜리스크 우수리지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콜레라 발생의 위험이 있을 때는 한인들과 중국인들은 시내 중국인 구역 이외에서 여인숙, 빵집, 하급음식점, 식료품가게, 이발소, 공중목욕탕 등 각종 작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또한 한인들과 중국인들은 호텔이나 여인숙, 개인주택, 하급음식점, 작업장, 공중목욕탕, 그리고 그 외 유럽인들이 경영하는 시설에서 거주하는 것도 금지되었을 정도였다.²⁹⁾

따라서 이주한인의 직업을 고찰할 때 이주민 직업의 통합적 모델의 수요적 측면, 특히 본 본 논문의 경우 러시아의 이민정책과 지역적인 차이 및 전염병과 같은 이주지에서의 특수한 상황적 요인 등도 이주민직업의 공급적 측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II. 논문의 한계성

본 논문에서는 이주민의 직업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주민 유출국에서의 인적자원에 대한 공급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인구유입국에서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이를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이주한 한인들의 경우로서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본 논문이 가지는 한계점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29) 톰스크 문서보관소 소장자료 “1911년 12. 29. 니콜스크 우수리스크의회결정서” (*Постановл
ения НикольскъУссуринскаго Городской Думы отъ 29-го декабря 1911 года №123
для жителей НикольскъУссуринскаго*), 이상근(1996:116-7) 채인용.

무엇보다도 자료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인들이 이주한 러시아 극동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이주민의 직업과 관련한 자료의 부재로 인해 본 논문에서는 입수 가능한 지역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한인의 직업과 관련한 전체적인 윤곽은 추정에 의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또한 입수된 자료라 하더라도 자료들간에 나타나는 통계수치상의 차이 또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 할 수 있다.³⁰⁾

이와 관련하여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당부분의 러시아측 자료에 대한 접근의 제한 또한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다.³¹⁾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인에 의한 러시아측 자료발굴이 주로 정치학자와 역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상대적으로 직업과 관련된 사회사적 자료는 우선 순위에서도 벗어나 있는 듯하다. 이런 점은 독립운동사와 관련하여 그리고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한인들과 관련한 정치적 자료들은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발굴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입증된다 할 것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인과 관련된 사회사 분야에서의 자료의 상대적 빈곤문제는 앞으로의 이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30) 예로서 <표 1>에서 자료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이주자들의 수치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블라디보스톡의 한인인구를 1907년 경 현규환(1967:87, 814-15)이 인용한 濟軒學人(編)(1916)『浦潮斯德事情』의 자료에 의하면 7,600명으로 되어 있으나 파치오르스키 외(Patsiorkovsky et al., 1995:568)가 인용한 1916년의 블라디보스톡의 인구조사에 의하면(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Владивостока 1916 Года) 4180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바로프스크의 한인인구에 있어서도 자료들간에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위의 濟軒學人(編)(1916)『浦潮斯德事情』의 자료에 의하면 2,700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상근(1996:188-190)이 인용한 톰스크 문서보관소 자료「1917년 2월 현재 하바로프스크시에 거주하는 황인종계열의 외국인에 대한 신고서」(О проживавших въ городъ Хабаровскъ иностранцахъ желтой расы За февраль мѣсяцъ 1917 го дѣ)에 의하면 1,066명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31)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인 이주에 관한 많은 귀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던 시베리아의 톰스크 문서보관소(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комитет Том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совета народных депутатов, Архивный отдел)의 소장문서가 최근 블라디보스톡으로 옮기게 됨으로서 자료이용이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참고문헌

- 《勸業新聞》, 1912. 12. 29.
- 《大東共報》, 1909. 3. 21.: 1909. 3. 22; 1909. 4. 4.
- 《大東新報》, 1910. 8. 18.
- 《東亞日報》, 1929. 7. 7.
- 고송무(1984), 《소련 중앙아시아의 한인들》, 한국국제문화협회.
- 고승제(1971), “沿海州移民의 社會史的分析,”《白山學報》第11號, pp. 149-168.
- 국사편찬위원회(1967), 《한국독립운동사》2.
- (1997), 《韓國獨立運動史 - 資料》(35 - 러시아 편 II).
- 권희영(1999), 《한국과 러시아: 관계와 변화》, 국학자료원.
- (1996), “독립국가연합 한민족의 역사와 현황: 이민사,”《세계의 한민족: 독립국가연합》, 통일원, pp. 36-89.
- (1993), “한민족의 노령이주사 연구(1863~1917),”《國史館論叢》(國史編纂委員會) 第41輯, pp. 153-186.
- 김 게르만(1994), “카자흐스탄 한인사회 민속과 문화,”《역사민속학》4:291-307.
- 김동진(1932), “在露同胞의 過去現在,”《新東亞》, 7月號.
- 김세용(1935), “西伯利亞의 朝鮮人活動,”《自由와 平和》, 金東煥(編) 京城: 三千里社, pp. 261-278.
- 뒤바보(1920), “俄領實記,”《獨立新聞》(上海版).
- 박명규 외. (1996), 《중앙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 한국사회사학회 논문집 제48집, 문학과 지성사.
- 박진환(1998), 《극동러시아의 벼농사, 국영농장, 그리고 조선족-러시아인들》, 농협대학 농촌개발연구소.
- 이광규 · 전경수 共著(1993), 《在蘇韓人: 人類學的 接近》, 서울: 집문당.
- 이동언(1991), “露領地域 初期 韓人社會에 관한 研究,”《한국독립운동사연구》5, pp. 205-232.
- 이명화(1989), “露領地方에서의 韓人 民族主義教育運動,”《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3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pp. 119-163.
- 이문옹(1981), “中央아시아의 韓國人 社會: 文化接變의 연구,”《社會科學과 政策研究》(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제3권 제1호, pp. 195-236.
- 이상근(1996), 《한인 노령이주사 연구》, 탐구당.

- 이채문(2000a),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 歷史와 理論,”《슬라브학보》(한국슬라브학회), 제15권 제1호, pp. 349-384.
- (2000b),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황화론(黃禍論)에 관한 연구,”《국제지역연구》(국제지역학회), 제4권 제1호, pp. 73-108.
- (2000c),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인농업이민의 사회사적 분석,” 2000년 한국슬라브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혜경(1998),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상황,”《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이혜경·정기선·강수돌·설동훈·석현호 공저, 미래 인력연구센터, pp. 13-101.
- 임계순(1987), “만주·노령 동포사회(1860-1910),”《한민족독립운동사》2, 국사편찬위원회, pp. 569-651.
- 최협·이광규(1998), 《多民族國家의 民族問題와 韓人社會》, 集文堂.
- 현규환(1967), 《韓國流移民史》(上卷) 蘇聯篇(極東地方), 서울: 語文閣, pp. 740-976.

- 勞農露國の極東地方の労動統計局(1923), “Состав Профсоюз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極東露領に於ける職業組合の組成),”《露亞經濟調査叢書》第67卷, 南滿洲鐵道株式會社庶務部調査課編譯, 昭和四年, 大阪: 大阪毎日新聞社.
- 石川年(譯)(1943), 《黑龍江外記》(西清), 東京: 滿洲日日新聞社東京支社出版部.
- 田川孝三(1944), “近代北鮮農村社會と流民問題,”《近代朝鮮史研究》(朝鮮史編修會研究彙纂第一輯), 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 pp. 407-625
- 朝鮮總督府(1910), “沿黑龍江總督管區內在住朝鮮人에 對한 露國政府의 方針에 관한 件,”(總督府文書 1910년 在外朝鮮人會設立關係), 국사편찬위원회 편(1966), 《한국독립운동사 (2)}, pp. 499-509.
- (1918), “西伯利に關する調査,”《朝鮮彙報》, 京城: 高麗書林.

- Бабищев, И(1959), Участие Китай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Трудящихся в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Ташкент.
- Бугаев, И.Ф. (최정운 역: 류한배 감수)(1996), 《재소한인들의 수난사: 해설 및 관계 공문서》, 세종연구소.
- Граве, Н(1912) Труды Командированной по Высочайшему повелению Амур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Выпукъ Житайцы Кореяцы и Японцы въ Приморь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В.Ф. Киршбаум, (‘極東露領に於ける黃色人種問題’), 《露亞經濟調査叢書》第49卷,

- pp. 1-214 南滿洲鐵道株式會社 庶務部調査課編譯, 昭和四年, 大阪: 大阪毎日新聞社).
- Ким Сын Хва(1965),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Алма Ата: Наука, 鄭泰秀 편역 (1989), 《소련韓族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Кхммангем, И.(1926), “Советск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ред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оветское Приморье Январь – Февраль № 1-2 Владивосток 1926”, 國史編纂委員會(1997), 《韓國獨立運動史》(資料 35, 러시아篇 II), pp. 456-7.
- Ли У Хе & Ким Ен Ын (Авторысоставители)(1992) Белая книга о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в 30-40 х годах (книга первая), Москва: Интерфакс.
- 김명호(역), 《스탈린 체제의 한인 강제이주: 구소련 국립중앙문서보관서 공개 극비 문서》(1994), 전국대 출판부.
- Ли У Хе & Ким Ен Ын (Авторысоставители)(1997), Белая книга о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в 30-40 х годах (Книга Вторая), Москва: МИКА.
- Пак, Борис Д(1992) УЧАСТИЕ КОРЕНЬСКОЙ ЭМИГРАЦИИ В РОССИИ В АНТИЯПОНСКОЙ БОРЬБЕ (1906–1917)『水邨 朴永錫教授華甲紀念 韓民族獨立運動史論叢』, 探究堂, pp. 1061-1151.
- (1993), Кореяцы 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Москва.
- Пак, Дмитрий Николаевич(1992), “КАК ЭТО БЫЛО”『水邨 朴永錫教授華甲紀念 韩民族独立運動史論叢』, 探究堂, pp. 1269-1290.
- Сним Енг Соб & Ким Герман (редакторы)(1998) История Кореев Казахстана: Сборник архивных документов Алматы: Сеул: Алматинский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Ассоциацией Корееведов Казахстана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МИА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Шилкевичъ, СД(1911) Труды командированной по ВЪСОЧАЙШЕМУ повелению в ПРИАМУРЬЕ Выпукъ V КОЛОНИЗАЦИОННОЕ ЗНАЧЕНИЕ ЗЕМЛЕДЕЛИЯ в ПРИАМУРЬЕ. Составилъ Начальникъ отряда земледельческой колонизации СД Шилкевичъ (『極東露領の農業と植民問題』, 《露亞經濟調查叢書》第8卷, 南満洲鐵道株式會社 庶務部調査課編譯, 大正15年, 大阪:大阪毎日新聞社), pp. 1-175.
- Aldrich, Howard(1975), “Ecological Succession in Racially Changing Neighborhoods: A Review of the Literature,” *Urban Quarterly* 10:327-45.
- Becker, Gary(1975), *Human Capit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ishop, Isabella Bird(1898), *Korea and Her Neighbours*, London, 이인화 역(1994).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서울: 살림.
- Bonacich(1972), "A Theory of Ethnic Antagonism: The Split Labor Marke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547-59.
- Bonacich, Edna, and John Modell(1980), *The Economic Basis of Ethnic Solidarit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hen, Hsiang-Shui(1992), *Chinatown No More: Taiwan Immigrants in Contemporary New York*,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 Chiswick, Barry R.(1978), "The Effect of Americanization on the Earning of Foreign-born 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6(5):897-921.
- (1983), "An Analysis of Earnings and Employment of Asian-American Men," *Journal of Labor Economics* 1(2):197-214.
- Crissman, Lawrence.(1967), "The Segmentary Structure of Urban Chinese Communities," *Man* 2:185-204.
- Doeringer, Peter, and Michael Piore(1971),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Lexington, MA: Heath.
- Frazier, Franklin(1957), *Black Bourgeoisie*, N.Y.: Free Press.
- Freedman, Marrice(1959), "The Handling of Money: A Note on the Background to the Economic Sophistication of the Overseas Chinese," *Man* 59:64-5.
- Hechter, Michael(1976), "Ethnicity and Industrialization: On the Proliferation of the Cultural Division of the Labor," *Ethnicity* 3:214-24.
- KHM(1925), "露領朝鮮人農村情形의 今昔," 《開闢》, 7月號, 100-104.
- Lee, Rose Hum(1960), *The Chines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Light, Ivan(1981), "Ethnic Succession," in *Ethnic Change*, ed. by Charles Keyes, pp. 53-86.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Light, Ivan and Carolyn Rosenstein(1995), *Race,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in Urban America*, N.Y.: Aldine de Gruyter.
- Lyman, Stanford(1974), *Chinese Americans*, New York: Random House.
- Patsiorkovsky, Valery, Stephen S. Fugita, and David J. O'Brien(1995), "Asians in Small Business in the Russian Far East: A Historical Overview and Comparison with Asians on the American West Coast,"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9(2):566-75.

- Portes, Alejandro, and Min Zhou(1992), "Gaining the Upper Hand: Economic Mobility among Immigrant and Domestic Minorities," *Ethnic and Racial Studies* 15:491-522.
- Portes, Alejandro, and Robert L. Bach(1985), *Latin Journey: Cuban and Mexic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Berkeley and Los Angele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iu, Paul(1987), *The Chinese Laundryman: A Study of Social Isolation*,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Sowell, Thomas(1975), *Race and Economics*, N.Y.: David McKay Co., Inc.
- Wada, Haruki(1987), "Koreans in the Soviet Far East, 1917-1937," in Dae-Sook Suh(ed.), *Koreans in the Soviet Union*, Honolulu, HI: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 of Hawaii. pp. 24-59.
- Waldinger(1986), *Through the Eye of the Needle: Immigrants and Enterprise in New York's Garment Trades*,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Wallimann, Isidor(1974), "Toward a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Ethnic Antagonism: The Case of the Foreign Worker in Switzerland," *Zeitschrift fur Soziologie* 3:84-94.
- Warner, W. Lloyd, and Leo Srole(1945), *The Social Systems of American Ethnic Group*,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 Yoon, In-Jin(1997), *On My Own: Korean Businesses and Race Relations in America*,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bstract

Non-Agricultural Occupations of Korean Immigrants at the Russian Far East

Chaimun Lee

The paper examines non-agricultural occupations of Korean immigrants in the Russian Far East from 1860s to 1930s. First of all, theoretical perspectives regarding immigrants' job selection and positions in the labor market such as cultural theory, segmented labor market theory, human capital theory, and ethnic enclave theory were reviewed and then how these theories can be applied to various jobs of Korean immigrants including mining, fishing, small business, service, and miscellaneous jobs was studied. Next,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ose theories cannot explain both supply and demand sides of migration simultaneously, suggesting the need to integrate two sides of migration. In order to fill out this gap in the literature, this paper suggests the integrative approach which combines supply side and demand side of migration. According to this model, several factors in the non-agricultural jobs which were affecting Korean immigration in the Russian Far East, were identified and discussed in relation with existing theoretical perspectives.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that, in order to understand Korean migration in the Russian Far East properly, we have to take into consideration simultaneously both supply-sided factors of immigration including farming-oriented characteristics of Koreans, Korean socio-economic problems preceding immigration, and self-dependent tendencies of Korean immigrants and demand-side factor like the Russian migration policy to the immigrants and various regional situations in the Russian Far East.

Key Words : Russian Far East, Korean migration, occupations of immigrants,
Primorye, integrative approach of migration